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과세정보의 대상 및 제공방법 (안 제8조의2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「국가자원안보 특별법」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통합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, 대상 및 비식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

※ 근거법령 :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8조제5항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산업통상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핵심자원의 수출입량, 수출입가격, 과세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관세청장은 필요시 수입 업자·수출업자 비식별화하여 제공 가능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수집 정보 구체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없음

2. 자원안보 관련 국제협력, 연구개발, 인력양성 등 정부 추진사항 (안 제36조, 제37조, 제38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「국가자원안보 특별법」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규정

※ 근거법령 :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6조제1항제5호(국제협력), 제37조제1항제4호(연구개발), 제38조제1항제3호(인력양성 및 교육·홍보)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정부는 공적개발원조, 민간 공동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가간 업무협약,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한 사항을 추진(안 제36조)
- 정부는 공동연구개발사업, 기술개발 및 이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·정보·자금 등의 지원,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한 사항을 추진(안 제37조)
- 정부는 포상, 자원안보 정책홍보에 필요한 포럼·세미나 개최,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한 사항을 추진(안 제38조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수집 정보 구체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없음